

Article

국제법상 월경자원의 처리에 관한 고찰
- 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을 중심으로 -

이 용 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
(606-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International Legal Regime on Transboundary Natural Resources:
Focus on Transboundary Oil and Gas Deposits
on the Continental Shelves

Yong Hee Lee*

Division of Law,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Abstract : Exploitation of transboundary oil and gas on continental shelves may cause conflicts between or among States concerned due to the physical character of these resources. As oil and gas are fluid, exploitation of such a transboundary oil field by one side may affect other parties in other jurisdictions. However, there is no universal international legal regime on the issue.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governing such resources through analysing UN Assembly's resolutions, UNCLOS, international judicial opinions, bilateral agreements and ILC activities relating to transboundary natural resour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seems that each coastal State has an inherent sovereign right on its part of the transboundary oil and gas deposit, but this right is not unlimited. Each state involved with the deposit has a duty to cooperate with other states--through information exchange,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Furthermore,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refrain from unilateral action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irrevocable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other states.

Key words : transboundary natural resources, joint development, unitisation, principle of cooperation, shared natural resources, UNCLOS

1. 서 론

‘월경천연자원(transboundary natural resources)’ 또는 공유천연자원(shared natural resources)이란 어떤 천연자원이 국가 간의 경계에 걸쳐 부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국가의 배타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부분적으로 그 자원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의 공통자원(common property of all

state)’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Birnie and Boyle 2002). 그러나 월경천연자원이 반드시 국가 간 경계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공해 또는 심해저와 같은 국제영역의 한부분과 연안국의 관할권의 한부분에 걸쳐 분포하는 천연자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영역으로 설정된 심해저와 기존 연안국의 대륙붕 경계에 걸쳐 존재하는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향후 동 자원의 개발을 중심으로 많은 법적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 yhlee@hhu.ac.kr

월경천연자원으로서의 국제수로, 화유성 생물자원, 지하수자원, 석유 및 가스자원이 주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석유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다양한 화학산업의 주요연료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집약적이며 고도기술사회인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상업적 및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Robson 2003). 이러한 석유 및 가스자원이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2005년 기준으로 하루 71.8백만 배럴이 생산되고 있다. 석유 및 가스자원의 분포는 육상과 해양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부존되어 있으며,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경우에는 특히 대륙붕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¹⁾

고체상태의 광물자원에 비하여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이 국제법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그 부존상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석유와 가스는 액체와 기체상태로서 유동성을 지니고 있고 그 물리적 특성상 전체 표면에 똑같은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어느 한쪽으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표면이 동일한 압력을 받는 수준까지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Robson 2003). 따라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경우 경계선 일방에서의 개발이 타방 관할권 하에 위치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둘러싸고 양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륙붕 석유 및 가스자원의 경우에는 육상의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과 달리 국가 간의 해양경계가 확정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경우에도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 간에 가스전의 처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²⁾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확정과정에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외교적 쟁점을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³⁾

그러나 오늘날 대륙붕에 부존되어 있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보편적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유엔결의, 국제판례, 국가 간 양자협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발전되어 오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륙붕상에 부존되어 있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련하여 관련국가간에 존재하는 권리 및 의무 문제를 유엔총

회결의,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판례 및 양자협정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국제법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초안과 월경지하수자원에 관한 협약 초안이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과 유사한 점을 착안하여 이를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2. 유엔체제를 통한 월경천연자원에 관한 국제법 제도의 발전 동향 분석

유엔총회 결의를 통한 발전

월경천연자원에 관한 국제법 이론의 논의는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영역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principle of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은 1945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석유를 비롯한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의 소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유엔을 통하여 발전시켜온 원칙이다(Birnie and Boyle 2002).

유엔은 1952년 결의 626을 통하여 인민이 그들의 천연적인 재산과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개발하는 권리는 그들 주권의 고유한 내용이라고 확인하고, 모든 유엔회원국으로 하여금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였다.⁴⁾ 이어 1960년에는 결의 1515를 통하여 모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과 자원에 대한 처분권은 국제법 하에서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⁵⁾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확인해 온 유엔은 1962년 12월 14일 결의⁶⁾를 통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을 선언하였다. 동 결의는 제1항에서 인민과 국가의 천연적 재산과 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권리는 그들 국가발전의 이익과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처분은 그들 인민 및 국가가 자유롭게 고려한 규칙과 조건에 일치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배타적인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인정과 함께 제5항에서는 인민과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자유롭고 수익적인 주권 행사는 주권평등의 기초위에서 국가 상호간에 존중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

¹⁾UNGA/CN.4/580(6 March 2007), para.11.

²⁾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박, 2006) p. 198-202 참조.

³⁾김찬규, 2004.

⁴⁾UNGA Res.626(VII)(21 Dec. 1952), preamble and para. 2.

⁵⁾UNGA Res.1515(XV)(15 Dec. 1960), para. 5.

⁶⁾UNGA Res.1803(XVII), 14 Dec. 1962.

다고 강조하여 국가 간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평등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일련의 유엔결의는 천연자원에 대한 영역국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을 뿐,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 또는 재생가능자원과 재생 불가능 자원에 대한 구별이나 그러한 자원의 보전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Birmie and Boyle 2002).

한편 유엔 총회는 1972년에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천연자원의 개발에 대한 환경적 고려의 필요성을 주목시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관심사항으로 등장한 월경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관련 국가상호 간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적 요소에 대해 주목하였다.

1973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둘 이상의 국가에 의해 공유되는 천연자원의 환경분야협력(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concerning natural resources shared by two or more States)’에 관한 결의 3129⁷⁾는 제1항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복수국가 간에 공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국제적 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국가 간 효과적인 협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국가들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하지는 못하였지만 복수국에 의한 공유천연자원의 보전 및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국제기준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공유자원에 대한 국제질서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 평가된다. 또한 동 결의는 제2항에서 “천연자원을 공유하고 그 자원의 개발에 이해를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은 그들 간의 기존의 정상적 관계의 틀 속에서 정보와 사전협의의 기초 위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월경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교환과 사전협의라는 협력 의무를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동 결의는 제3항에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으로 하여금 월경천연자원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 3129는 국제사회에서 공유자원에 대한 국제적 제도 형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관계 당사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국가간 월경천연자원의 개발을 규율하는 국제법원칙을 생성시키는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Bundy

2003).

결의 3129에 이어 유엔총회는 1974년 12월 12일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을 결의 3281⁸⁾로 채택하였다. 동 헌장에서도 천연자원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제2조에서 그동안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어온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즉, 모든 국가는 그들의 재산과 천연자원 및 경제적 활동을 소유, 이용 및 처분하는 완전한 영구적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제3조에서는 “복수의 국가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각국은 타국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킴이 없이 그 자원의 최적이용(optimal use)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와 사전협의 토대에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결의 3129 제1항의 내용을 수용하고, 그것에 더하여 일방의 개발활동이 타방에 손해를 끼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자원의 최적 이용을 월경천연자원 개발의 가치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추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최적이용인가 하는 점과 타국의 정당한 이익인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두고 있지 않다(Birmie and Boyle 2002). 또한 제30조에서는 “모든 국가는 그들의 관할 하에서 또는 통제 하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이 타국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선점에 의한 권리취득의 규칙(rule of capture)’⁹⁾에 기초한 일방의 무분별한 개발활동이 타방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월경천연자원보유국의 자원주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환경계획의 월경천연자원에 관한 원칙

환경보호와 연계한 월경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제정은 유엔환경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유엔환경계획은 유엔총회 결의 3129 제3항에 따라 1978년 5월 19일 ‘둘 이상 국가에 의해 공유되는 천연자원의 보전 및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국가들의 지침으로서의 활동원칙초안(the draft principles of conduct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for the guidance of State in the conservation

⁷⁾UNGA Res.3129(XXVIII), 13 Dec. 1973.

⁸⁾UNGA Res.3281(XXIX), 12 Dec. 1974.

⁹⁾선점에 의한 권리취득의 규칙은 육상에 부존된 석유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전된 것으로서, 자기토지내의 석유 및 가스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인접토지소유자의 토지 하부에 존재하는 석유 또는 가스자원을 고갈시킨다 하더라도 동 석유 및 가스자원을 굴착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Ong, David M., 1999, Joint Development of Common Offshore Oil and Gas Deposits: “Mere” State Practice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p. 777.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강보석, 2006. 월경천연자원 개발의 법규.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p. 218 참조.

¹⁰⁾<http://www.undp.org>(검색일자 2007년 4월 2일)

and harmonious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shared by two or more State)¹¹⁾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들은 동 원칙에 첨부된 설명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유천연자원 보유국들이 동 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행동 원칙을 지침적 성격으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상 의무를 창설하거나 그러한 의무의 결함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일반국제법상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설명되어졌다.¹¹⁾

총 15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원칙은 제1원칙으로서 공유천연자원의 '형평한 이용의 개념(the concept of equitable utilization)'에 일치하도록 공유천연자원의 개발로 인한 악영향을 통제, 예방, 저감, 제거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원칙으로서는 효과적인 환경분야의 국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특별히 규율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협정의 내용으로 지침에서 제시한 원칙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규정할 것과 환경문제를 협의할 '공동국제위원회(joint international commissions)'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3원칙으로서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원칙에 따라 공유천연자원 보유국들은 각자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타국 또는 자국 관할권 외측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책임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4원칙은 각국으로 하여금 공유천연자원의 개발이 타국에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제5원칙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6원칙으로서는 국가가 타국영토의 환경에 합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측되는 공유천연자원에 관한 계획의 시행 및 변경 시 동 사실을 관련국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제7원칙으로서는 공유천연자원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 통보, 협의 및 기타 형태의 협력은 선의의 원칙과 선린의 정신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지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8원칙은 공유천연자원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합의된 자료에 기초하여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의 모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과학연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9원칙은 공유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중대한 자연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동 사실을 타국과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10원칙은 공유천연자원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부탁할 것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1원칙은 공유천연자원의 보전과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엔헌장과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제12원칙은 공유천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국제환경의무의 이행책임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하고, 환경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였다. 제13원칙은 국내환경정책에 따라 국내적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그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 악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4원칙은 자국법체제에 따라서 또는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하여, 공유천연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환경적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타국의 국민에게 자국의 국민에게 허용되는 수준으로 자국의 행정 및 사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5원칙은 이 원칙들이 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²⁾

이러한 내용의 원칙초안 중 주목되는 부분은, 공유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원칙으로서 형평한 이용의 개념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서,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국가 간 발전 정도의 차이 등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 2001). 또한 이 원칙초안은 협력의 내용으로서 통보, 자료 및 정보의 교환, 공동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유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피해에 대한 국제책으로서 보상책임과 국내적 구제절차의 개방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엔환경계획의 원칙초안에 대하여 유엔총회는 유엔환경계획이 작성한 원칙을 선의의 원칙과 선린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유천연자원 보유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 체결시 지침 및 권고로 활용하여 줄 것을 모든 국가에게 요청하였다.

동 결의를 채택하는 시점에서 일부국가는 자국의 개발로 인하여 타국에 유해한 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만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공유천연자원의 개념을 반대하는 입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록 위의 원칙들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 많은 국제문서와 국가실행에 의하여 수용되어짐으로서 월경천연자원에 관한 국제법제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Birnie and Boyle 2002).

¹¹⁾UNGA Res.34/186, 18 Dec. 1979.

¹²⁾*Ibid.*, para.3.

유엔해양법협약과 월경천연자원

해양의 헌법전이라고 불리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가 간 해양경계에 걸쳐 부존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월경해양생물자원과 연안국과 심해저에 걸쳐 존재하는 월경심해저자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동 협약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안국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¹³⁾ 즉,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생물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타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였지만, 대륙붕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¹⁴⁾ 더욱이 대륙붕의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필요하지 않으며, 연안국이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동 자원의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대륙붕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 권리의 배타성을 확고히 규정하고 있다(Cameron 2006).

월경해양생물자원의 처리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제63조에서 동일어족이나 연관된 어종이 2개국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출현하는 경우 관련국가간 직접하거나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그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러한 의무의 부과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연안국에게 부여한 주권적 권리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지 적절한 조치에 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약한 수준의 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준의 협력 의무의 부여는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연안국 간에 반복하여 부여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국가 간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보존·탐사 및 이용 조정을 위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 노력하여야 할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될 것은 폐쇄해 또

는 반폐쇄해 국가들 간에는 월경천연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과 해저광물자원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연안국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직접적 규정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부분이다. 협약은 제74조와 제83조에서 인접국 또는 대항국간 중복관할주장이 제기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도록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규정은 당사국간에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는 동안에 하여야 할 2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경계획정 완료 전에 중복지역에서 월경천연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를 예정한 조치로 보여진다(Cameron 2006). 그러나 무엇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Nandan and Rosenne 1993). 둘째, 잠정기간동안 당사국으로 하여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의무는 분쟁대상지역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않는다. 다만, 일방당사국의 어떤 행위가 분쟁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부당히 지연하거나 평화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더 나아가 일방당사국의 행위가 타방당사국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거나 잠정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규정을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복지역에서 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이 발견되고, 동 자원이 양국의 경계에 걸쳐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경계획정에 이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국이 잠정약정을 체결하여 동 자원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잠정약정의 체결 그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잠정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타방당사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일방당사국의 일방적 개발활동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당사국간 협의와 협상이 개발활동의 전

¹³⁾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 제5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¹⁴⁾ 상해협약 제56조 제2항.

제가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Cameron 2006).

한편, 동 협약은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의 한계와 심해저에 걸쳐 존재하는 심해저자원의 개발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¹⁵⁾ 여기서 심해저자원이란 복합다금속 단괴를 비롯하여 심해저의 해저나 해저 아래에 있는 자연상태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또는 기체성 광물자원을 의미함으로,¹⁶⁾ 연안국의 대륙붕 한계와 심해저에 걸쳐 부존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대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142조 제1항에서는 연안국의 국가관할권 한계에 걸쳐 존재하는 심해저자원의 광상에 대한 심해저활동¹⁷⁾은 이러한 광상이 그 관할권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연안국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with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any coastal state)'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연안국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국간에 사전통고(prior notification)를 포함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심해저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관할권 내측에 부존된 자원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관련연안국의 사전동의(prior consent)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안국 대륙붕과 심해저간에 존재하는 월경천연자원의 개발제도는 인접 또는 대항국간 해양경계에 걸쳐 존재하는 월경천연자원의 개발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Ong 1999).

3. 국제판례 및 양자조약을 통한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에 관한 법제도의 발전 동향 분석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국제판례의 태도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1969년 독일과 네덜란드 및 덴마크를 당사자로 하는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획정상 월경자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바 있다. 판결주문에서 재판소는 교섭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천연자원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또한 경계획정의 원칙에 따른 경우에도 당사국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의거 합의에 의해 확정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복구역은 동일하게

배분하되 당사국들이 동 지역을 공동관할, 사용 또는 개발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판결주문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중복된 지역의 분할에 대해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통한 해결이 '광상의 단일성(unity of deposits)'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히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¹⁹⁾ 이는 대륙붕상에 존재하는 석유나 가스자원과 같은 월경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광상의 단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광상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인접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시 광상의 단일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이유로서 동일한 광상이 두 국가의 경계선 양쪽에 존재하고, 한쪽에서의 자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타방 당사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비경제적인 개발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⁰⁾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비록 광상의 단일성이 경계획정 교섭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축소하였지만, 대륙붕 경계획정 상 월경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 석유와 가스등 액체성 및 기체성 월경자원의 특성상 광상의 단일성 고려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광상의 단일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 등은 월경자원의 처리에 관한 국제법 발전상 매우 의미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Szekely 1986).

1980년 아이슬란드·노르웨이 간 Jan Mayen 대륙붕사건

1980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아이슬란드와 Jan Mayen 섬 사이의 대륙붕경계획정을 조정위원회에 부탁한 사건은 대륙붕경계획정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월경석유자원의 잠재성이 보다 분명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건이다(Szekely 1986).

동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분쟁대상 지역의 석유자원의 부존잠재성을 고려하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 후 조정위원회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별도로 사전에 체결한 협정을 통하여 양국 간 중간선보다 아이슬란드에게 유리하게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노르웨이가 인정한 사실과 분쟁지역의 석유부존가능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양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조정위원회는

¹⁵⁾상계협약 제142조.

¹⁶⁾상계협약 제133조 (a)호.

¹⁷⁾심해저활동이란 심해저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상계협약 제1조 제1항 제3호).

¹⁸⁾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ement, *ICJ Reports*(1969), paras.83-101.

¹⁹⁾*Ibid.*, para.99.

²⁰⁾*Ibid.*, para.97.

아이슬란드가 석유수입국이라는 점, 아이슬란드 대륙붕의 석유부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분쟁지역의 해저능선 지역이 석유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석유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세한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국은 1981년 10월 22일 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합작투자개발방식(joint venture exploitation scheme)’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동 협정이 양측 경계선에 걸쳐 존재하는 석유자원을 단일단위화방식(unitization)²¹⁾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즉, 공동수역의 경계에 걸쳐 존재하는 석유자원은 그 전체가 공동수역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Charney and Alexander 1993).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경계사건

1977년 체결된 특별협정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속된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경계확정사건에서 월경천연자원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쟁점요소로는 대두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1982년 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임시재판관 Evensen은 월경천연자원의 개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Evensen은 이 사건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양국의 관심사는 석유개발에 있음을 지적하고, 석유의 잠재성이 관련되어 있는 한 양국 간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은 순수한 도박과 같은 것으로서 동 경계선에 의해 석유광상의 중요한 부분이 한 국가에 치우쳐 확정될 수도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지역의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공동개발, 공동이용 또는 공동관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형평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²²⁾ 동 재판관은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중복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개발구역을 제시하였다. 동 구역은 양측이 동일한 면적으로 구성하고, 탐사와 개발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공동정책의 기준으로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각각의 국내법과 석유정책 및 행정이 우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당사국은 상대방

구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면허자로 하여금 50%의 개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 구역의 운영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영역국이 담당하도록 하였다.²³⁾ 탐사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으며, 상설협의위원회(permanent consultative committee)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국의 경계에 걸쳐 존재하는 월경석유광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단위화절차(unitization procedures)를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²⁴⁾

이와 같은 Evensen의 권고를 고려하여 양국은 1988년 Gulf of Gabes 지역에 대하여 공동탐사구역을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5년에는 탐사 및 생산분배협정을, 1997년에는 공동구역중 November 블럭의 7광구를 단일단위화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국제재판에서 제시된 법률적 판결 또는 주장들은 대륙붕 경계확정 시 중복지역에 존재하는 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의 처리를 위하여 공동개발의 형태를 통한 당사국간 협력방식을 경계확정 시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점차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국 간 협력의 의무가 요구되는 대상이 경계에 걸쳐 존재하는 석유 및 가스자원 뿐만 아니라 중복지역에 존재하는 광상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Ong 1999). 특히,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경우에는 단일단위화방식에 의한 해결이 일관되게 권고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양자협정의 태도

경계확정이 필요한 인접 또는 대항국간의 대륙붕에 존재하는 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의 처리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은 주로 양자협정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 유엔 해양법 사무국 홈페이지의 조약부분에 등재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5년 말까지 83개의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에 관한 양자협정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²⁵⁾ 양자협정의 예는 지역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 북해, 페르시아 만, 남중국해, 카리브 해 등 폐쇄해 또는 반폐쇄 국가들 간에 체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1958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페르시아 만 대륙붕 경계협정부터 2004년 호

²¹⁾단일단위화(Unitisation)란 유전개발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유유전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유유전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여 개발하는 조건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당해 유전에 대한 각 당사자의 개별적 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유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석유의 분배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계약적 합의를 의미한다. Robson, Charles, 2003, *Transboundary Petroleum Reservoirs: Legal Issues and Solution*, Blake, Gerald H.(eds.),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Kluwer Law International, pp. 6-7참조.

²²⁾Tunisia/Libya Continental Shelf Case, *ICJ Reports*, 1982, p. 306.

²³⁾*Ibid.*, p. 307.

²⁴⁾*Ibid.*, p. 309.

²⁵⁾<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index.htm>(검색일자 2007. 4. 10)

주와 뉴질랜드 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경계협정에 이르기 까지 약 50년에 걸쳐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1970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협정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일관된 형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월경천연자원의 존재가 확인되기 전에 해양경계확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 내에 미래에 발견될 월경천연자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둔 예와 해양경계확정 전에 중북주장지역 내에 석유 및 가스자원의 부존이 확인되거나 유망한 것으로 인지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월경천연자원의 처리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협력의 정도에 따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만을 규정한 경우, 원충지역 설치를 통한 분쟁의 예방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구체적인 광상의 확인절차를 규정한 경우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도 공동개발구역 설치를 규정한 경우와 단일단위화방식에 입각한 공동개발방식을 채택한 예로 구분되며, 또한 자원의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방식에 있어서도 형평한 분배방식과 동등한 분배방식 등으로 나누어 진다. 이하에서는 양자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기준으로 83개 협정을 구분하여 보도록 한다. 내용의 구성은 대표적인 협정규정의 예를 적시하고 유사협정은 그 협정명만을 열거하도록 하며, 공동개발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다른 기회에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확인 전 채택된 해양경계협정의 경우

(1) 효과적 개발과 형평한 분배를 위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협력의무 규정 예

월경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규정의 예로서, 월경천연자원이 경계확정 후 확인되는 경우, 양 당사국으로 하여금 동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동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형평한 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 예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최초 예로서는 1965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에 체결된 대륙붕 경계협정 제4조를 들 수 있다.

하나의 지질적 석유구조나 유전 또는 모래와 자갈을 포함한 기타 광물자원의 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 존재하며, 경계선 일방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것일 경우에, 계약당사국은 조광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그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방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형태는 양당사국 간 협력의 대상이 되는 자

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월경천연자원이 존재할 것과 둘째, 동 자원의 정질상 일방의 천연자원이 타방의 대륙붕에서의 개발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발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자원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양당사국은 동 자원의 경쟁적 개발로 인한 악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발방법과 동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형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효과적인 개발방법이나 형평한 수익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양 당사국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으며, 합의를 하여야 할 의무 대신에 단순히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양자협정의 예를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965년 영국과 네덜란드 간 경계선에 걸쳐 부존하는 단일지질구조개발에 관한 협정 제1조

1966년 영국과 덴마크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1968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1968년 이태리·유고슬라비아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1969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1971년 튀니지와 이탈리아 대륙붕 경계협정 제4조

1971년 이탈리아와 튀니지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1971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특정해저경계협정 제7조

1971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티모르 및 아라푸라 해 특정해저경계협정 제7조

1971년 태국과 인도네시아 간 말라카해협 북부 및 안다만해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1971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간 말라카해협 북부 대륙붕경계협정 제3조

1971년 영국과 덴마크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1971년 영국과 독일 간 북해대륙붕 경계협정 제3조

1972년 스웨덴과 핀란드 간 대륙붕경계협정 의정서

1973년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 간 특정경계협정 제6조

1973년 덴마크와 캐나다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5조

1974년 인도와 스리랑카 간 역사적 수역 경계협정 제7조

1976년 인도와 스리랑카 간 Mannar 만과 벵골 만 해양경계협정 제6조

1976년 인도와 몰디브 간 아라비아 해 해양경계협정 제5조

1978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간 토레스해협 포함 지역의 주권 및 해양경계조약 제6조

1978년 네덜란드와 베네수엘라 간 경계확정조약 제6조

1980년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간 해양경계협정 제3조

- 1984년 스웨덴과 덴마크 간 대륙붕 및 어업수역 경계협정 제6조
- 1986년 리비아와 몰타간 특별협정 제3조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행협정 제3조
- 1988년 호주와 솔로몬 간 특정해양 및 해저경계협정 제2조
- 1988년 영국과 아일랜드 간 대륙붕 경계협정 제3조
- 199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베네수엘라 간 해양 및 해저경계조약 제7조
- 1991년 영국과 벨기에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 1992년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 1997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및 특정해저경계협정 제9조
- 1997년 태국과 베트남 간 태국만 해양경계협정 제4조
- 1997년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간 발트 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조약 제3조
- 2002년 튀니지와 알제리 간 해양경계협정 잠정협정 제5조
- 2004년 호주와 뉴질랜드 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위에서 언급한 규정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지만, 1974년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3조, 1978년 인도와 태국 간 안다만해 해저경계협정 제4조, 1978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간 안다만 해 3국간 경계협정 제3조, 1979년 말레이시아와 태국 간 태국만 대륙붕경계협정에 관한 양해각서 제4조 등은 각각 다음과 같이 양 당사국간에 월경천연자원의 존재에 관한 정보교환 의무를 추가하여 제시한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제1조에 언급된 경계선에 걸쳐 단일한 석유 또는 가스 구조 또는 광상, 기타광물광상이 있는 경우, 양 정부는 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그 개발로 인한 수익의 형평한 분배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이상과 같은 규정의 내용에 추가하여, 월경천연자원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합의 전 일방당사국에 의한 일방적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동 행위가 타방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타방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예도 있다. 이러한 규정 예는 다음과 같이 1974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 Biscay만에서의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1974년 이탈리아와 스페인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1977년 이탈리아와 그리스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하나의 천연자원 광상이 대륙붕 경계선에 의해 나누

어지고, 경계선 한쪽에 위치한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 다른 쪽에 위치한 시설로부터 전부 또는 부분이 개발 가능한 경우, 계약당사국은 면허보유자와 협의하여 그 개발이 최대 이익을 발생하게 하고 각각의 대륙붕 천연자원에 대한 계약국의 권리 전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상 개발조건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대륙붕 경계선 양쪽에 위치한 하나의 천연자원광상이 이미 개발되고 있을 경우, 계약당사국은 면허보유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2000년에 체결된 중국과 베트남 간 통킹 만 해양경계협정에서는 제7조에서 월경천연자원의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원칙을 동등배분원칙을 적용하고 있다(Zou 2005).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경계선에 걸쳐 석유, 가스 또는 기타광물광상의 단일한 지구물리구조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구조 또는 광상을 개발하고 그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동등배분에 관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다른 분배방식으로는 매장량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를 규정한 양자협정의 예도 찾아 볼 수 있는 바, 1973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 해양경계조약 제43조, 1986년 콜롬비아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조약 제3조, 1993년 콜롬비아와 자메이카 간 해양경계조약 제2조가 그 예이다.

1973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 해양경계조약 제43조 경계선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어떠한 광물광상도 경계선 양측에서 각각 발견된 전체매장량의 비율에 따라서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각 당사국은 앞의 규정에서 확립된 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합리적인 자원의 이용요구를 고려하여 타당사국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동 광상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1977년 콜롬비아·코스타리카간 해양 및 해저경계협정조약 제3조와 2003년 이집트와 사이프러스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협정 제2조는 간략한 형태로 비재생자원의 보호를 위한 협력 또는 자원개발모델의 합의에 이르기 위한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1978년 독일과 스웨덴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3조와 1988년 독일과 덴마크 간 대륙붕 및 어업수역경계조약 제3조의 경우에는 “월경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양계약국은 개발개시 전에 일방계약국의 요청에 따라 동 자원의 개발을 규율하는 조건에 합의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방의 개발행위 전 협상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완충지역의 설치 및 단일단위화 협의의무 부과 규정 예

월경천연자원의 존재 가능성을 전제하여, 경계선 양쪽으로 일정거리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동 구역 내에서의 굴착을 금지하여 일방당사국의 일방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타국의 자원이 악영향을 받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으로, 동 자원의 개발을 조정하고 단일단위화하도록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형태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예는 주로 페르시아 만 주변국간의 경계획정 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태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69년 이란과 카타르 간 대륙붕경계협정이다.

1969년 이란·카타르협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어떠한 단일의 지질학적 석유구조나 유전 또는 다른 광물의 단일한 지질학적 구조나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 분포하고, 경계선 한쪽에 위치한 그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 다른 쪽에서의 직접적인 굴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발될 수 있는 경우, (a) 양 정부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125미터 이내에 있도록 어느 쪽에서도 굴착되어서는 안된다. (b) 양 정부는 경계선 양쪽의 작업이 조정되거나 단일단위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69년 이후에는 1971년 바레인과 이란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1974년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1974년 이란과 오만 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2000년에 오만과 파키스탄 간 해양경계획정협정 제6조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이 수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1968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는 경계선 양측으로 5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석유굴착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미국과 멕시코 간 200해리 외측의 서부멕시코 만 대륙붕경계조약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조약 발효 후 10년 동안 경계선으로부터 1.4마일의 범위 내에서 석유 및 가스굴착 및 개발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형평한 개발을 위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단일단위화원칙에 입각한 양자협정의 예

경계획정 후 발견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동 석유 또는 가스광상을 단일단위화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취한 예는 1976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에 Frigg Field Reservoir 개발 및 그곳으로부터 영국으로의 가스수송에 관한 협정에서 제일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1981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간에 체결된 아이슬란드와 Jan Mayen간 대륙붕경계협정도 제8조에서 단일단위화원칙에

입각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의도하고 있다.

석유광상이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양측에 걸쳐 있거나 경계선 남측에 전체가 위치하지만 제2조의 좌표 이원으로 연장되어 있는 경우 그 광상의 분배 및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단일단위화원칙(the usual unitization principles)’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예는 북해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 왔으며, 이와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양자협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79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Murchison Field 개발에 관한 협정

198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Startford Field 개발에 관한 협정

1992년 영국과 네덜란드 간 Markham Field 개발에 관한 협정

2000년 나이지리아와 적도기니 간 해양경계조약 제6조

특히, 1976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에 Frigg Field Reservoir 개발 및 그곳으로부터 영국으로의 가스수송에 관한 협정, 1979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Murchison Field 개발에 관한 협정, 198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Startford Field 개발에 관한 협정은 1965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에 체결된 대륙붕 경계협정 제4조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발견된 월경천연자원에 대한 단일단위화원칙의 적용 예이고, 1992년 영국과 네덜란드 간 Markham Field 개발에 관한 협정은 1965년 영국과 네덜란드 간 경계선에 걸쳐 부존하는 단일지질구조개발에 관한 협정 제1조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간 체결된 경계지역 인접 해저에 관한 협정 부속서는 “양국은 경계지역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데(owned in common)’ 합의한다.”고 규정하여 자원의 공동화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4) 합의에 의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의무 규정 예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동 자원의 개발방식을 합의에 의하여야만 된다는 점을 강조한 양자협정의 예가 있다. 1965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대륙붕 경계협정 제4조는 “양 계약국의 대륙붕 경계에 걸쳐 분포한 천연자원이 확인되고, 일방의 자원이 타방의 대륙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일방 계약국의 요청에 의해 동 자원의 개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79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Faroe 섬과 노르웨이 사이 대륙붕 등 경계협정 제3조, 1992년 오만과 예멘 간 국제경계협정 제6조도 이

와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1971년 덴마크와 독일 간 북해대륙붕경계조약 제2조는 합의에 의한 개발이외에도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부존확인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방체약국의 대륙붕에 광물광상이 확인되고 타방체약국이 동 자원이 자국의 대륙붕에 까지 분포하고 있다고 의견을 가진 경우, 후자는 전자에게 그러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전자가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부탁하여야 한다.

양 체약국이 광물광상의 분포에 대하여 합의하였거나 중재재판소가 광물광상의 월경성을 결정한 경우 양 체약국정부는 양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고 양체약국이 각자의 대륙붕에 분포한 자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고려한 개발규칙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미 광물자원이 개발된 경우에는 그 규칙에 합리적인 보상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형태는 1971년 네덜란드와 독일 간 북해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1995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안메인과 그린란드 사이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1997년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간 대륙붕 및 어업수역경계협정 제2조, 1999년 덴마크와 영국 간 Faros 섬과 영국사이 해양경계협정 제2조에서 수용되고 있다.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부존 확인후 채택된 해양경계협정의 경우

(1) 단일단위화원칙의 적용 없는 공동개발구역 설정

(가) 공동개발구역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동등분배 규정 예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이 체결되기 전에 중북관할권주장지역 내에 석유 또는 가스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경우에, 경계획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으로 부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을 추진하고 동 자원의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협정의 예가 있다. 그러한 양자협정의 예로서는 1958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간에 체결된 페르시아 만 대륙붕 경계협정 제2조, 1965년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중립구역(neutral zone) 분할에 관한 협정, 1974년에 수단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홍해해저 및 하층토 천연자원의 공동개발협정, 1990년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 ‘공동개발청(Joint Authority)’ 설치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1969년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간에 체결된 해양경계 및 도서소유권협정 제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Bundug 유전의 소유권은 양국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양국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on the basis of equality)’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위의 유전 및 동 유전의 개발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는데 동의한다.

특히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도 이러한 양자협정의 예에 해당되는 바, 동 협정은 제9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을 각각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특별분배 방식 설정 예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외에 독특한 수익분배방식을 규정한 양자협정의 예도 찾아 볼 수 있는데, 1993년 세네갈과 기니비사우 간 관리 및 협력협정 제2조가 그 예이다. 동 협정은 제2조에서 “대륙붕자원의 경우 생산물 기준으로 세네갈이 85%, 기니비사우가 15%의 비율로 분배하고, 추가 발견자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단일단위화원칙에 입각한 공동개발구역 설정 및 개발 추진 의무화 규정 예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고, 동 구역 내에 존재하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단일단위화방식에 의해 처리하고 하는 양자협정의 예는 최근 들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나이지리아와 사오토펜프린시페 간 석유 및 기타자원의 공동개발조약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일 지질적 석유 구조 또는 유전이 존재하고, 동 자원이 굴착에 의하여 공동개발구역과 일방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계선 일방의 자원이 타방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발 가능한 것일 때, 일방당사국이 동 사실을 타방당사국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가 있는 경우 양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원칙과 각자의 지역에 부존된 석유의 양을 고려하여서 그 광상 또는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단일단위화하도록 합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단일단위화규정들은 2002년 호주와 동티모르 간 티모르해조약 제9조, 2002년 나이지리아와 적도기니 간 Zafiro-Ekanga 석유유전 공동탐사에 관한 조약, 2003년 가이아나와 바베이도스 간 중북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협력조약 제6조 제7항, 2003년 호주와 티모르레스티 간 Sunrise 및 Troubadour 광상 단일단위화협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 유사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국제법제도의 분석

국제법위원회의 유사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법전화 노력

유엔총회산하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최근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거나 국가 간 양자조약 등을 통하여 국제법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월경천연자원에 관한 국제법제도의 법전화 작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²⁶⁾

대표적인 예로서 1997년 5월 2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이하에서 ‘국제수로비항행법협약’이라 함)’과 현재 국제법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제1차 초안이 제시된 ‘월경지하대수층에 관한 협약초안(draft articles on the law of transboundary aquifers: 이하에서 ‘월경지하수자원협약초안’이라 함)’을 들 수 있다.

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은 유엔총회가 1970년 결의 2669(XXV)를 통하여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위해 이 분야의 연구를 개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이 개시되었다(김 2005). 1971년부터 개시된 법전화에 관한 논의 결과 1991년 국제법위원회가 제1차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94년 최종초안을 작성하여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유엔총회는 동 초안을 산하 제6위원회 전체실무그룹에 검토를 의뢰하여 쟁점부분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97년 5월 21일 표결로 동 협약을 채택하였다.²⁷⁾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이란 국제하천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하거나, 농업 또는 공업용수로 활용하거나, 위락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항행 목적 이외의 이용이 국제법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항행의 경우 자유로운 통항권의 보장만으로 충분하지만, 비항행적 이용의 경우에는 상류국과 하류국간 이익의 형평한 균형 유지와 상류국 이용행위로 인한 하류국으로의 환경적 악영향 방지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하천이라는 공유천연자원에 대한 이용과 보전에 관한 상

류국과 하류국간의 관계설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즉, 공유천연자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수로에 관하여 자국내 자원에 대한 영역주권이외에 인접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는 부분으로서, 1997년 협약은 이와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규범을 법전화한 것으로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법제도의 발전방향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 2004).

한편, 월경지하수자원에 관한 협약초안은 국제법위원회가 2000년도에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천연자원을 과제의 하나로 선택한 것에서 기인되며, 2002년 국제법위원회 결정에 의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²⁸⁾ 동 위원회는 공유천연자원에 대한 국제법제도의 법전화를 추진함에 있어, 단일의 지질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지하수자원(groundwater)과 석유 및 가스자원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동 주제에 대한 특별보고자로 Chusei Yamada를 지명하였다. 이중 지하수자원은 표층수와 연계되어 있거나 지하수맥을 흐르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²⁹⁾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지하대수층에 저장되어 표층수와 연계가 단절된 지하수(unrelated confined groundwater)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특별보고자 Yamada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초안을 우선적으로 작성한 후 석유와 가스에 관한 초안을 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일정에 따라 2006년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협약초안³⁰⁾을 제출하였다. 동 초안은 2008년 1월 1일까지 각국 정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회람되었으며, 동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는 2008년부터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³¹⁾

전 지구적으로 지하수자원의 자원적 가치는 표층담수의 양이 42,800입방 킬로미터인데 반하여 지하수는 그것의 약 547배에 해당하는 23,400,000입방 킬로미터로 평가되고 있다. 담수의 부족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매일 6,000명의 영아가 개발도상국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전지구적인 물 부족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하수자원은 매우 중요한 천연자원임에 틀림없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

²⁶⁾국제법위원회는 월경천연자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유천연자원(shared natural resource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²⁷⁾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은 유엔총회에서 찬성 103, 반대 3, 기권 27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2000년 5월 2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며, 35번째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위원회의 법전화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UNGA/CN.4/533(30 April 2003), paras.6-9 참조.

²⁸⁾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10 and corrigendum(A/57/10 and Corr.1), para.518.

²⁹⁾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 제2조 (a)호.

³⁰⁾UNGA/CN.4/L.688(7 June 2006).

³¹⁾UNGA/CN.4/580(6 March 2007), para.1.

히 표층수와 연계가 단절된 단일 지질학 구조에 포함된 지하수는 해저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자원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월경지하수자원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제도의 내용은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국제법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그 자원적 가치측면에서도 한 예를 찾아보면 대단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Guarani 지하대수층(aquifer)의 경우 매장지하수의 양이 40,000억방킬로미터로서, 이 양은 일인당 하루 100리터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55억 명의 인구가 2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

1997년 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은 전문과 7개장 37개 조문과 중재(arbitration)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의 골격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은 총칙(introduction)으로서, 협약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본 협약과 다른 수로협약과의 관계, 수로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상 수로(watercourse)는 '표층수와 지하수체계가 상호간 물리적 관련성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공동의 집수지로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었으며,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courses)는 '수로가 부분적으로 각각 다른 국가에 위치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³²⁾ 한편, 동 협약과 기존 국제수로협약의 관계에 관해서, 일반적 성격을 지닌 동 협약이 특별한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국제수로협약상의 발생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기존협약을 이 협약에 규정된 원칙에 조화시키도록 당사국이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³³⁾

제2장은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및 참여의 원칙(equitable and reasonable utilization and participation), 자국 내 국제수로를 타수로유역국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용하여 할 의무(obligation not to cause significant harm), 협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 to cooperate), 자료 및 정보의 정기적 교환의무(regular exchange of data and information)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5조는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및 참여의 원칙을 규정하고, 수로유역국(watercourse State)으로 하여금 자국 영토내의 국제수로를

형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이용이 관련 수로유역국의 이익을 고려하며 국제수로의 최적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및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수로유역국으로 하여금 국제수로의 개발 및 보호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며, 개별수로유역국은 국제수로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협력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추상적인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수로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나열하였다.

- (a) 수로의 지리적, 수문학적, 수로학적, 기후적, 생태적 요소 및 기타 자연적 요소
- (b) 관련 수로유역국들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성
- (c) 수로에 의존하는 각 수로유역국의 인구
- (d) 한 국가의 수로이용이 타국에 미치는 효과
- (e) 기존 및 잠재적 수로이용
- (f) 수로 수자원의 보전, 보호, 개발 및 이용의 경제성과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
- (g) 특별히 계획된 이용 또는 기존 이용의 대체 가능성 및 대안³⁴⁾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국 내 국제수로를 타수로유역국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용하여야 할 의무는 이미 트레일제련소사건이래 국제환경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제8조에 규정된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국제수로의 최적 이용과 적절한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권평등, 영토의 보전, 상호이익 및 선의의 기초 하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동시에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공동체제 또는 위원회(joint mechanisms or commissions)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제3장은 각 수로유역국이 수로이용조치와 관련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수로이용조치에 대한 정보의 교환,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통보조치, 통보에 대한 부당한 지연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로이용에 따른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있다(유 등 2000).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자국이 계획한 조치가 타 수로유역국에 중대한 악영향(a significant adverse effects)을 줄 수 있는 때에는 동 조치의 이행 허가 또는 이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³⁵⁾ 통보접수국은 최소 6월 최장 12월의 자료 및 정보 분석기

³²⁾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 제2조 (a)호 및 (b)호.

³³⁾상계협약 제3조.

³⁴⁾상계협약 제6조.

³⁵⁾상계협약 제12조.

간이 부여되며,³⁶⁾ 통보국은 동 기간 동안 추가요청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통보접수국의 동의가 없는 한 계획된 조치를 이행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³⁷⁾ 통보접수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신을 하지 않으면, 통보국은 위에서 언급한 제5조와 제7조의 원칙에 따라 계획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 통보접수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요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대의 통보를 하였다면 이행되지 않았을 조치에 수반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³⁸⁾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접수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양국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 및 협상(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을 개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동안 통보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6월동안 계획된 조치의 이행 또는 이행 허가를 삼가야 한다.³⁹⁾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통보 절차가 진행됨이 없이 한 수로유역국이 타수로유역국이 자국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근거서면을 첨부하여 수로유역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획수립국은 제기된 이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국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양국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협의 및 협상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통보접수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보국의 요청에 따라 6월동안 계획된 조치의 이행 또는 이행 허가를 삼가야 한다.⁴⁰⁾

제4장은 국제수로의 보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제수로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로유역국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국제수로 환경에 유해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긴급환경재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홍수 또는 지진 등 자연재해나 산업시설의 사고 등 인위적 재난에 의하여 국제수로의 생태계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피해가 임박한 경우 수로유역국들로 하여금 지체없이 신속하게 피해예상국과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6장은 보칙으로서, 국제적 또는 국지적 무력분쟁 시 국제수로 및 관련 시설과 설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직접 접촉 곤란 시 간접적 절차를 통한 자료 및 정보의 교환,

통보, 의견교환, 협의 및 협상의 진행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시 국가안보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예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세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엔헌장 상 규정되어 있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상 개시 6월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3인으로 구성되는 사실심사위원회(a Fact-Finding Commission)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 분쟁을 부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및 병행하여 동 협약에의 비준, 가입, 승인 시 또는 그후 언제라도 지역경제통합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서면으로 당사자 간 외교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협약 부속서 규정된 중재 재판절차에 대해 분쟁을 부탁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¹⁾

이상의 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동 협약의 내용이 전술한 바 있는 유엔환경계획이 1978년 작성한 ‘둘 이상 국가에 의해 공유되는 천연자원의 보전 및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국가들의 지침으로서의 활동원칙초안(the draft principles of conduct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for the guidance of State in the conservation and harmonious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shared by two or more State)’에 언급된 원칙들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국 영역내의 국제수로 이용에 대한 영역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동 행위로 인하여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대한 통보 및 자료와 정보 교환의 의무, 협의와 협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일정기간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금지의무까지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유천연자원 이용의 원칙으로서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도 발전도 형태로 보인다.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한 것도 주목되며, 더욱이 비록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심사위원회를 통한 의무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것도 특이한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당사국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원에 대한 영역주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획기적인 진

³⁶⁾상계협약 제13조.

³⁷⁾상계협약 제14조.

³⁸⁾상계협약 제16조.

³⁹⁾상계협약 제17조.

⁴⁰⁾상계협약 제18조.

⁴¹⁾상계협약 제33조.

전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⁴²⁾ 더욱이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이 개발로 인한 자원 자체의 환경적 위험성이 매우 적고 비재생성 자원에 속하는 월경 석유 및 가스자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공유자원의 이용하는 국가 간에 일정한 협력의 의무가 존재하며, 협력의 의무를 준수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한 점은 월경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제법제도 형성에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06년 월경지하수자원협약초안

국제법위원회가 2006년에 작성하여 유엔회원국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회람시킨 월경지하수자원협약초안은 전체 5개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1997년 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협약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협약의 적용범위로서 월경지하대수층의 이용, 월경지하대수층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동 자원의 보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월경지하대수층의 경우에도 다른 수원으로부터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renewable)' 지하대수층과 다른 수원으로부터 보충되지 않는 '재생 불가능한(non-renewable)' 지하대수층을 모두 대상으로 있다.

제2장은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으로서, '지하대수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aquifer State)'의 주권,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과 그와 관련된 요소, 다른 지하대수층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할 의무, 협력에 관한 일반의무, 자료와 정보의 정기적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전통국제법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바와 같이 월경지하대수층보유국은 자국 영토에 위치한 지하대수층에 대하여 주권을 보유함을 명시하였다.⁴³⁾ 이와 동시에 동 자원을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itable and resonable utilization)'에 따라 월경지하대수층자원을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자원에 대한 주권행사의 방법이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이 국제법상 월경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원칙으로

확립되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 내용으로서, i) 관련 지하대수층국가들이 그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형평하고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며, ii) 지하대수층의 수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지하대수층보유국의 현재 및 미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전체적인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iv) 재생가능한 지하대수층이 효과적인 기능의 지속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재생가능한 월경 지하대수층을 이용하지 않도록 예시하고 있다.⁴⁴⁾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따른 월경지하대수층자원의 활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형평한 이용의 실현수단은 여전히 당사국에게 일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협약초안은 전술한 바 있는 국제수로 비항행법협약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9가지를 예시하고 있다.⁴⁵⁾

- (a) 지하대수층에 의존하는 각국의 인구
- (b) 관련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경제적 및 기타 필요성
- (c) 지하대수층의 자연적 특징
- (d) 지하대수층의 형성 및 재생에 미치는 요소
- (e) 지하대수층의 현재 및 미래 이용
- (f) 한 국가의 이용이 관련국에게 미치는 효과
- (g) 특정한 기준에 계획된 지하대수층 이용의 대체 가능성
- (h) 지하대수층의 개발, 보호 및 보전과 동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i) 관련생태계에서의 지하대수층 기능

이들 고려요소 상호간에 우열관계는 해당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교하여 특정지하대수층에 대하여 더 중요한 경우 우월성이 부여되며, 서로 다른 이용행위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 중대한 인간의 필요성을 우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또한 동 협약초안은 국제수로의 비항행법협약과 마찬가지로, 지하대수층의 이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타국의 지하대수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협의를

⁴²⁾ 동 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평하고 합리적인 국제수로이용의 원칙'과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로유역국에 중대한 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는 헝가리와 체코 간에 발생한 The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전경일, 1998,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Gabčíkovo-Nagymaros Project에 관한 사건, 국제법평론, 통권 제10호, pp. 125-149 참조.

⁴³⁾ 월경지하수자원협약초안 제3조.

⁴⁴⁾ 상계 협약초안 제4조.

⁴⁵⁾ 상계 협약초안 제5조 제1항.

⁴⁶⁾ 상계 협약초안 제5조 제2항.

통하여 그러한 피해를 제거하고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⁴⁷⁾ 이 밖에도 지하대수층보유국은 동 자원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적절한 보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체제의 설치 등 협력의 의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⁴⁸⁾

제3장은 지하대수층 자원의 보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대수층 생태계의 보호 및 보전, 지하대수층으로 유입되는 저수지 및 지하대수층으로부터 방류되는 저수지의 보호, 지하대수층 오염의 방지, 저감 및 통제, 지하대수층 환경 감시체제, 지하대수층 관리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체제와 관련하여, 각국에게 적절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관련국 중 하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월경지하대수층의 관리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적절한 경우 공동관리체제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⁹⁾

제4장은 다른 대수층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가 특정하게 계획한 활동이 타국의 지하대수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활동을 이행하거나 이행 허가를 하기 전에 영향평가 결과 등의 기술적 자료 및 정보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피해예상국에게 통보(notification)하여야 한다. 영향 정도에 대해 관련국간의 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형평한 해결을 위한 협의 또는 필요한 경우 협상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사실확인기구(an independent fact-finding body)'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동 협약은 합의에 이르러야 할 의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획 수립국의 계획중지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구속력이 없는 제3자적 기관의 활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보칙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과학적·기술적 협력,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법, 무력분쟁 시 지하대수층 시설의 보호,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통보 제한, 양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협약초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 때, 당초 특별보고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재생 불가능한 해저석유 및 가스자원과 유사한 조건의 재생 불가능한 지하수자원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하수 인입으로 인하여 재

생가능한 지하수자원까지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해저 석유 및 가스자원에 적용할 수 있는 협약초안으로서 완전히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해저석유 및 가스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지하수자원은 대부분 육지에서 이루어지며, 지하수 자원의 오염문제와 해저석유 및 가스의 오염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월경지하수자원의 이용에 관한 동 협약의 내용이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에 완전히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다.⁵⁰⁾ 그러나 월경천연자원이라는 점, 일국의 자원 개발활동이 타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자원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 현실적인 자원 이용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 자원의 미래적 가치로 인하여 관련국가간 분쟁발생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월경해저석유 및 가스자원개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국 영역내의 자원에 대한 영영국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동 자원의 월경성을 고려하여 각국에게 형평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협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자국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통지와 이견 해소를 위한 협의 및 협상, 정기적인 자료와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체제의 설치 등을 통한 협력의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의 개발활동에 대하여 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견 해소를 위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할 의무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월경천연자원에 대하여 각국이 영영주권을 향유하지만 동 권리가 절대적이지는 않고 일정한 범위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과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자원에 대한 영영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대륙붕에 존재하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대한 보편적 국제법제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판례, 국가실행 및 관련국제조약에 의하여 발전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 현 단계까지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대륙붕에 존재하는 월경석유 및 가

⁴⁷⁾상계협약초안 제6조

⁴⁸⁾상계협약초안 제7조.

⁴⁹⁾상계협약초안 제13조.

⁵⁰⁾UNGA/CN.4/580(6 March 2007), para.14.

⁵¹⁾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제3항.

스자원에 대한 관련국가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관련국가의 권리 측면을 살펴보면, 대륙붕에 존재하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일방당사국의 자원에 대한 권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 협약 제7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안국은 자국의 대륙붕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국의 영역에 해당하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하여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존재함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동 권리는 경계획정이 완료된 후 발견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계획정이 되기 전 중복된 관할권 주장구역에서 발견된 자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가 미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안국의 대륙붕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이 필요하지 않은 고유의 권리임으로⁵¹⁾ 그 권리가 미치는 한계가 결정되지 않을 뿐이지 동 자원의 일부에 대하여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존재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Ong 1999). 또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이 존재하는 일방당사국이 동 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타방당사국이 동 자원의 개발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협약 제77조 제2항에서 확인하고 있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갖는 배타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안국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연안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에 따라 기 확정된 관련국간의 경계선의 자국 측에 위치해 있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경계가 확정되기 전 중복광구지역내의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 선점에 의한 권리취득의 규칙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undy 2003). 그러나 석유 및 가스자원의 부존특성상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일부를 개발하는 경우 그것이 곧 타방의 영역 내에 위치한 석유 및 가스자원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 1974년 12월 12일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제3조에서는 “복수의 국가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각국은 타국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킴이 없이 그 자원의 최적이용(optimal use)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와 사전협의 토대에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있다. 즉, 비록 자국 측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동 자원의 개발로 인하여 타국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적 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42조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의 대륙붕과 심해저에 걸쳐 부존하고 있는 광물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연안국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통고제를 포함한 협의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자원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⁵²⁾ 비록 대륙붕에 존재하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와 동일한 형태로 부존하는 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42조의 규정을 대륙붕상의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Ong 1999). 따라서 대륙붕 경계획정이 완료된 후 발견된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 개발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절차로서 정보의 교환, 활동의 통지, 협의 및 협상의 개시 등이 연안국이 취하여야 할 협력의 의무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양자협정을 통해서도 수용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 경우 일방연안국이 타방연안국의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활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연안국에게 부여되는 협력의 의무 중 당사국간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합의를 이루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이지 관련당사국과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임하여 부당한 협상의 지연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⁵³⁾

한편, 후자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안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의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경계획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경계가 확정된 후 위의 예에 따라서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계획정협상을 진행하면서 잠정적인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당해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획정 자체를 배제하고 중복지역 전체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사건을 살펴보면 공동개발방식을 중복지역의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자협정의 예에서도 중복지역의 자원개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⁵²⁾유엔해양법협약 제142조 제2항.

⁵³⁾상해협약 제300조.

당사국간에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공동개발의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광상을 단일단위화하는 방식을 양자협정에서 다수 채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나 재판관들의 의견에서도 동 방식이 권고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북주장지역의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을 공동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일부학자들은 단일단위화방식에 의한 공동개발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공평한 방식에 의한 석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국제사회의 당위성과도 부합하고 국제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국제관습법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1990). 국제판례의 존재와 일부 양자협정의 예에서 단일단위화방식에 의한 중북지역 내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견 일정한 관행의 지속과 이에 대한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양자협정의 예를 살펴볼 때 단일단위화방식의 내용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중북지역의 월경 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하여 모두 일관되게 단일단위화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방법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 또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Ong 1999; Bundy 2003).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륙붕에 존재하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관련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관련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동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고유의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동 권리의 행사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타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관련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는 타국의 자원에 영향을 주는 개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동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당사국간에 협력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협력 의무의 범위는 확실하지 않으나 정보교환의 의무, 통지의 의무, 협의의 의무 및 협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륙붕에 존재하는 월경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 간의 관행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더욱 그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월경 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국제법제도가 멀지 않은 미래에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국제법제도 발전은 월경천연자원에 대한 법전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촉진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동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실적에서는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발생하는 주변국간의 월경가스자원에 대한 협의 및 처리절차를 면

밀히 추적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대륙붕 자원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보석. 2006. 월경천연자원 개발의 법규. *해사법연구*, 18(2), 213-242.
- 김대순. 2005. *국제법론*. 삼영사. 1233 p.
- 김영구. 2004.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992 p.
- 김정건. 2004. *국제법*. 박영사. 1295 p.
- 김찬규. 2004. 한·중·일 해저삼국지. *경향신문*, 2004년 7월 15일, 14면.
- 박병구. 2006. *한중일 석유전쟁*. 한스미디어. 334 p.
-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2000. *국제법 II*. 법문사. 905 p.
- 이상면. 1990. 해양경계선상의 에너지개발에 있어서의 Unitization. *서울대학교 법학*, 31(3/4), 122-128.
- 전경일. 1998.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Gabcikov-Nagymaros Project에 관한 사건. *국제법평론*, 10, 125-149.
- 최재철. 2001. 국제환경법: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호 체제. p. 533-572. In: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오윤경 등. 박영사, 서울.
- Benvenuti, E. 2002. *Sharing Transboundary Resources*. Cambridge Univ. Press. 276 p.
- Birnie, P.W. and A.E. Boyle. 2002.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Oxford Univ. Press. 798 p.
- Bruhacs, J. 1992.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Martinus Nijhoff. 251 p.
- Bundy, R.R. 2003.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oil & gas) and boundary disputes. p. 23-40. In: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ed. by G.H. Blake et al. Kluwer Law International.
- Cameron, P.D. 2006. The Rules of engagement: Developing cross-border petroleum deposits in the North Sea and the Caribbean. *Int. Comp. Law Q.*, 55, 559-586.
- Charney, J.I. and L.M. Alexander. 1993.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 II. Martinus Nijhoff. 2138 p.
- Gault, I. 1979. The Frigg gas field: Exploitation of an international cross-boundary petroleum field. *Mar. Policy*, 3, 302-311.
- Nandan, S.N. and S. Rosenne. 199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II. Martinus Nijhoff. 1040 p.
- Ong, D.M. 1999. Joint Development of Common Offshore Oil and Gas Deposits: "Mere" State Practice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m. J. Int. Law*, 93, 771-804.
- Onorato, W.T. 1968. Apportionment of an International Common Petroleum Deposit. *Int. Comp. Law Q.*, 17, 85-102.

-
- Robson, C. 2003. Transboundary Petroleum Reservoirs: Legal Issues and Solution. p. 3-21. In: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ed. by G.H. Blake *et al.* Kluwer Law International.
-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10 and corrigendum(A/57/10 and Corr.1, 2002)
- United Nations. 1987. The Law of the Sea: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1970-1984). United Nations Publications. 297 p.
- United Nations. 1991. The Law of the Sea: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1942-1969). United Nations Publications. 96 p.
- United Nations. 1992. The Law of the Sea: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1985-1991). United Nations Publications. 96 p.
- United Nations. 2004. Law of the Sea Bulletin, No. 55. United Nations Publication, 59 p.
- UNGA/CN.4/L.688, 7 June 2006.
- UNGA/CN.4/580, 6 March 2007.
- UNGA Res.3129(XXVIII), 13 Dec. 1973.
- UNGA Res.3281(XXIX), 12 Dec. 1974.
- UNGA Res. 34/186, 1 Dec. 1979.
-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index.htm> [cited 2007-04-10]
-
- Received Apr. 20, 2007*
Accepted Apr. 30, 2007